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17,327,605	36,519,828
일반회계	1,136,114,539	34,083,436
특별회계	81,213,066	2,436,392
공기업특별회계	65,390,545	1,961,716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8,414,874	852,446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6,975,671	1,109,270
기타특별회계	15,822,521	474,6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00	4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80,812	29,424
의료보호특별회계	3,312,823	99,385
수질개선특별회계	892,515	26,775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8,500	555
주택사업특별회계	409,865	12,296
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10,206,506	306,195

제 2 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 14,221,629 " 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 41,500,000 " 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 기준인건비 "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대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한다.